

학사운영 규정

2019. 2. 1. 일부개정

제3장 학사관리

제1절 학년, 수업연한, 재학연한

제37조(수업연한)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(授業年限)은 4년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1. 공과대학 건축학과: 5년
 2. 의과대학: 6년
 3. 학사편입: 2년(건축학과: 4년)
 4. 2학년 일반 및 특별 편입: 3년(건축학과: 4년)
 5. 3학년 일반 및 특별 편입: 2년(건축학과: 3년)
 6. 건축학과로 복수전공한 경우 3년을 추가 부여
- ②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 다만, 공과대학 건축학과, 의과대학, 사이버국방학과, 약학대학은 예외로 한다.

제38조(재학연한)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(在學年限)은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연수로 한다.

- ②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의 재학연한에 2년을 추가 부여한다. 다만, 건축학과로 복수전공하는 경우 6년을 추가 부여한다.
- ③ 유급을 인정하는 학과(부)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.
- ④ 휴학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- 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소속 학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제적을 유예할 수 있다.
- ⑥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, 졸업논문, 영어성적 및 한자인증 등 학과(부)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.

제2절 복수전공

제133조(자격과 진입시기) ① 복수전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과과정에 따라 102학점(학사편입생은 34학점)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2.50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신청자는 제56조 및 제57조 등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이후에야 복수전공 이수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.

제134조(지원범위 및 정원) ① 이중전공의 지원범위에 관한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은 복수전공에 준용한다.

- ② 서울캠퍼스 및 세종캠퍼스의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(부) 간에는 복수전공을 할 수 없다.
- ③ 학과(부)의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학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135조(전형방법) ① 복수전공을 위해서는 소정의 기간에 신청을 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복수전공 지원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과 면접고사를 실시한다. 예·체능계 학과(부)를 지원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실기고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복수전공 허가를 받은 학생은 다른 학과(부)의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.

제136조(학점인정) ① 복수전공학생은 복수전공 학기 시작 전 소정의 기간에 교과목인정원, 성적증명서를 복수전공 학과(학부) 행정실(의과대학의 경우 학사지원부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복수전공학생이 해당 복수전공의 교과목을 복수전공 진입 이전에 이수한 경우에는 학과(부)장, 대학(학부)장의 승인을 받아 21학점까지 복수전공의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
③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과(부)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부전공의 효력이 상실된다.

제137조(학점이수) ①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복수전공 학과(부)의 교육과정표에서 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각 학과(부)는 제1항에서 정한 교과목 외에 추가로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138조(이수포기) 복수전공 이수포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진입포기: 복수전공 허가 이후 그 진입 전에 이루어지는 포기
2. 중도포기: 복수전공 허가에 따라 그 진입 이후에 이루어지는 포기

제139조(진입포기) ① 진입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1전공 완료 학기말 1개월 전(1월말 또는 7월말)까지 소속 학과(학부) 행정실(의과대학의 경우 학사지원부)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포기원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 학위수여 일정에 맞추어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.

③ 진입포기를 한 학생은 복수전공 학과(부)에 재입학을 할 수 없다.

제140조(중도포기) ① 중도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기말 1개월 전(1월말 또는 7월말)까지 소정의 방식으로 포기를 신청한다.

② 제1항의 포기신청을 한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 학위수여 일정에 맞추어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.

③ 기일 내에 포기신청을 하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 학기의 학위수여 일정에 맞추어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.

④ 중도포기를 한 학생은 복수전공 학과(부)에 재입학을 할 수 없다.

제141조(학위수여) ① 복수전공학생의 제1전공에 대한 학위수여는 복수전공을 이수할 때까지 연기한다.

② 복수전공을 이수한 학생이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에는 제1전공과 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.

제142조(증명서) ① 복수전공 이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 증명서를 발급

한다.

1. 재학증명서: 본문에 “위 사람은 제1전공을 이수하고 현재 복수전공을 이수중임”이라고 표기
2. 성적증명서: 제1전공과 복수전공에 대하여 별도의 증명을 발급하며, 재학 중에는 제1전공의 성적증명서에 복수전공 이수중이라는 사실을 표기
3. 졸업증명서, 이수증명서: 제1전공과 복수전공에 대하여 별도의 졸업증명서를 발급함(다만, 복수전공 이수중 제1전공 이수에 대하여는 “위 사람은 제1전공을 이수하고 현재 복수전공을 이수중임”이라고 표기한 이수증명서를 발급함)

② 복수전공의 중도포기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증명서를 발급한다.

1. 성적증명서: 제1전공은 졸업한 경우와 같이 발급하고, 복수전공은 최종 이수학기까지 발급함
2. 졸업증명서: 제1전공에 관해서만 졸업증명서를 발급함